

**제5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 ① 국가대표 지도자는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회원종목단체의 소속 지도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6.>

② 국가대표 지도자 중 총 감독과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 5년 이상과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 경력과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4.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해당종목 지도경력 있는 사람

③ 국가대표 지도자 중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 2년 이상과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안경기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해당종목의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과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2년 이상의 해당종목 지도경력 있는 사람